



제422회 국회(임시회)
제1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원료비 연동제 및 공익서비스 비용 부담 근거 마련〉
■ 김정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7028호)

2025. 2.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박희석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원료비 연동제 근거 마련	3
2. 공익서비스 비용 부담 근거 마련	12
※ 참고자료	20
1. 도시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	20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정호의원 등 12인
2. 제안연월일 : 2024. 12. 27.
3. 회부연월일 : 2024. 12. 30.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가스도매사업자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도시가스 요금과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이하 “공급규정”이라 함)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급규정 어디에도 가스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차별없이 보편적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이하 “보편적 공급”이라 함)하는 내용은 두고 있지 않음.

한편, 도시가스는 에너지복지 차원 외에도 국가·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공공정책에 부응하여 공급(이하 “공익서비스”라 함)되고 있으나 국가·지방자치단체는 공익서비스를 위해 도시가스 공급량과 도시가스 요금을 통제하면서도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으므로, 높은 수준의 공익서비스제공을 위해서는 도시가스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에 보편적 공급, 공익서비스에 대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및 부담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적·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가스공사의 이른바 ‘미수금’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함(제20조의5 및 제20조의6 신설 등).

Ⅲ. 검토의견

1. 원료비 연동제 근거 마련

개정안은 도시가스 요금을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산정하도록 하고, 원료비 연동제의 적용 유보 및 유보 시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3호 및 제20조의5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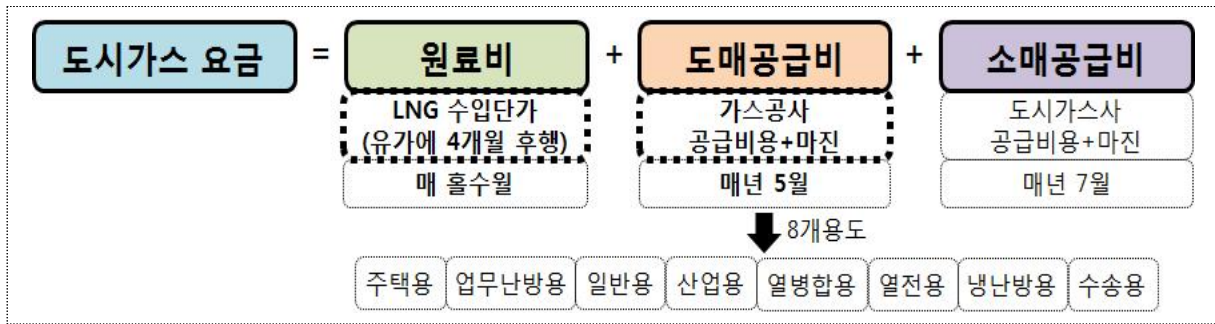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0. (생략) <u><신설></u> 법률 제20440호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 <u><신설></u>	제2조(정의) ----- -----. 1. ~ 10. (현행과 같음) <u>13. “원료비 연동제”란 도시가스 요금을 국제유가, 환율, 세금 및 기타 비용을 고려하여 산정한 천연가스 도입비용(이하 “원료비”라 한다)과 일정한 주기로 연동하여 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u> 법률 제20440호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 <u>제20조의5(원료비 연동제) ①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산정하며 원료비 연동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제20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에서 정한다.</u>

현 행	개 정 안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u>국민생활 안정 및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이나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료비 연동제의 적용을 일시적으로 유보할 수 있다.</u>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료비 연동제가 유보된 기간의 실제 도시가스 공급량에 원료비 연동제를 적용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u>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을 실시할 수 있다.</u> ④ 가스도매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3항에 따른 재정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료비 연동제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도시가스 요금은 LNG 도입가격인 “원료비”와 가스도매사업자(한국가스공사)의 “도매공급비” 및 가스소매사업자(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소매공급비”로 구성됨¹⁾.

1) 도매공급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천연가스 도매요금 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기획재정부장관 협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승인하고, 소매공급비는 시·도 물가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지사가 승인함.

[도시가스 요금 구성]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원료비 연동제란 국제유가, 환율 등의 변동에 따른 LNG 도입비용의 변동을 도시가스 요금에 반영하는 제도로 1998년 8월부터 시행되었으며, 민수용(주택용, 일반용)의 경우 2개월(홀수월) 간격으로, 민수용을 제외한 타용도²⁾의 경우 매월 조정이 이루어짐.

현행법상 원료비 연동제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으나, 한국가스공사의 내부규정인 「천연가스 공급규정」³⁾의 별표 3 “도시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⁴⁾⁵⁾(이하 “지침”)에 따라 도시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⁶⁾를 시행하고 있으며,

2) 상업용 : 업무난방용, 냉난방공조용, 산업용, 수송용
도시가스발전용 : 열병합용, 연료전지용, 열전용설비용

3)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공급규정) ① 가스도매사업자는 도시가스의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공급규정(이하 “공급규정”이라 한다)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 ⑧ (생략)

4) 도시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 원문은 첨부자료 1 참조

5) 상업용 및 도시가스발전용은 “발전용요금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천연가스 공급규정」 별표 4)의 원료비 단가 산정을 준용하여 매월 조정

6) 민수용 산정원료비가 민수용 기준원료비를 ±3% 초과하여 변동된 경우 산정원료비가 새로운 기준원료비가 되며, 요금상 원료비는 기준원료비에 미수금 정산단가를 가감함.

비상시 연동제 유보규정에 따라 국제유가 또는 환율 급등으로 LNG 가격이 현저하게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는 경우 국민생활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연동제를 유보한다는 통보가 있으면 한국가스공사는 이에 따르도록 하고 있음.

또한 지침에서는 연동제 유보로 인해 원료비 손실이 발생할 경우 향후 가스가격 안정 시 원료비 손실분을 가격에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한국가스공사는 원료비 연동제 유보에 따른 원료비 손실을 향후 받을 수 있는 자산으로 인식하고, 재무제표상 미수금(기타비금융자산)으로 표기하고 있음.

원료비 연동제의 유보경과를 살펴보면, 2008년 LNG 가격 급등으로 연동제를 유보함에 따라 한국가스공사의 원료비 미수금은 2012년 5조 5,356억원까지 누적되었으나,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에 걸쳐 전액 회수되었음. 이후 2021년 다시 LNG 가격이 급등하였고 민수용 원료비 미수금은 2022년 8조 5,856억원, 2023년 13조 110억원, 2024년 3분기 기준 13조 8,883억원까지 증가하였음⁷⁾.

7) 2022년 주택용 도시가스요금은 원료비의 57% 수준이었고, 2023년 주택용 도시가스요금은 원료비의 93% 수준으로, 주택용 도시가스요금은 원료비보다 낮게 책정되고 있음(출처: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도시가스·난방요금에의 원가반영, 정부와 시장의 적절한 역할 분담 필요, 2024.7.24.)

[한국가스공사 원료비 미수금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3분기
민수용	도시가스 내 용도구분 없음 ('20.8월부터 구분)								1,941	17,656	85,856	130,110	138,883
상업용									4,596	4,410	3,948	6,970	4,606
도시가스 발전용									374	319	81	787	303
합계	55,356	51,644	42,749	26,725	9,617	△1,512	6,200	12,817	6,911	17,656	85,856	130,110	143,792

주: '24년 4분기 결산 진행 중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이처럼 현재 비상시 연동제 유보로 인한 한국가스공사의 원료비 미수금 누적 문제가 심각한 상황으로, 원료비 연동제 유보가 지속되는 경우 시장가격 왜곡으로 인한 에너지의 효율적 배분 저해, 현재의 원가 이하 요금 사용자와 미래의 요금 부담자의 불일치로 인한 세대간 불공정, 한국가스공사의 재무건전성 악화로 인한 천연가스 수급 안정성 저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도시가스 요금을 원료비 연동제에 따라 산정하도록 법률에 명시하고, 원료비 연동제의 유보 및 유보 시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현재 한국가스공사의 내부규정으로 시행 중인 도시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원료비 연동제를 유보한 경우 한국가스공사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해소를 통한 재정건전성 개선 및 가스요금 인상 폭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첫째, 안 제20조의5제2항은 원료비 연동제의 적용 유보요건으로 현행 지침 상의 비상시 연동제 유보규정⁸⁾과 유사하게 “국민생활안정 및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이나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연동제 유보로 인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유보조항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① 유보요건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② 유보 연장 요건과 유보 해제 요건에 대해서도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둘째, 안 제20조의5제3항은 원료비 연동제 유보 시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재정 지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8) 5. 비상시 연동제 유보

- 공사는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을 운영함에 있어, 일정 사유 발생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연동제를 일시 유보한다는 통보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각 항목별 사유는 아래와 같다.
- 민수용 원료비의 경우, 국제원유가 또는 환율급등 등으로 LNG가격이 현저하게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어 국민생활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상업용 원료비의 경우, 천연가스 수급문제 발생 또는 국제원유가 또는 환율급등 등으로 LNG가격이 현저하게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어 국민생활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도시가스발전용 원료비의 경우, 천연가스 수급문제 등으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현행 지침에 따르면 원료비 연동제 유보 시 발생한 원료비 손실에 대해서는 향후 가격에 반영하여 손실을 보전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원료비 손실에 대한 일부 지원 또는 전부 지원 여부 등 재정 지원 기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또한 안 제20조의5제3항은 재정 지원의 조건으로 “원료비 연동제가 유보된 기간의 실제 도시가스 공급량에 원료비 연동제를 적용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재정 지원 시기가 원료비 연동제 적용 시인지 원료비 연동제 유보 시인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원료비 연동제 유보 시” 등으로 문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보임.

셋째, 안 제20조의5제4항은 가스도매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재정 지원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3항에서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재정 지원의 실시 여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어 가스도매사업자의 재정 지원 요구의 구속력이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안 제20조의5제4항의 실효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임.

넷째, 안 제20조의5제1항은 원료비 연동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급 규정”에서, 안 제20조의5제5항은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료비 연동제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 정하도록

록 하고 있는데, 원료비 연동제와 관련하여 공급규정과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 각각 정하여야 할 사항이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임.

개정안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현행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⁹⁾ 및 같은 법 시행령¹⁰⁾에 가스요금 등 에너지 가격의 안정

9)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제5조(투자계정의 세입·세출) ① (생략)

② 투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제1항제6호에 따른 광해방지사업금 및 가산금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광해방지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에 대한 출연 또는 보조(채무보증을 위한 자금의 지원을 포함하며, 제1항제6호에 따른 광해방지사업금 및 가산금은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는 광해방지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을 하는 법인·기관 또는 단체에의 출연금 또는 출자금
4. 융자계정으로의 전출금
5. 투자계정의 차입금 및 예수금의 원리금 상환
6. 투자계정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경비

③ (생략)

10)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제3조(사업의 범위 등) ①법 제5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 및 자원 관련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석유수급·가격안정사업 및 석유품질관리사업
2. 석유개발사업 및 「한국석유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석유공사가 수행하는 사업
3.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도시가스사업
4. 「송유관안전관리법」에 의한 송유관설치사업
5.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복지 사업
6. 국제협약에 의한 심해저광물자원개발사업 및 「광업법」·「해저광물자원 개발법」·「해외 자원개발 사업법」에 의한 광물자원개발사업
7. 석재사업 및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사업
8. 「석탄산업법」에 의한 석탄사업 및 「폐광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대체산업의 지원사업
9.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이용합리화사업,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재생에너지개발보급사업,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 에너지공급사업 및 「에너지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 9의2.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소산업과 관련된 사업
10.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또는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한 가스의 안전관리와 유통구조개선사업
- 10의2. 석유가격구조개편에 따른 지원사업
11. 전기·가스요금 등 에너지 가격의 안정을 위한 지원 사업
12. 제1호부터 제9호까지, 제9호의2, 제10호, 제10호의2 및 제11호의 사업과 관련된 조사연구 및 기술개발사업

을 위한 지원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예특회계 세출에 대한 근거규정이 이미 마련되어 있으므로 「도시가스사업법」의 개정 없이도 필요 시 가스도매사업자에 대한 재정지원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며,

기획재정부는 한국가스공사는 공익적 목적(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시장체계 내에서 달성하기 위한 기관으로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것은 원칙적 측면이나 손실의 산정 측면에서 곤란하다는 입장임.

2. 공익서비스 비용 부담 근거 마련

개정안은 가스도매사업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경영 손실, 재정 부담 등의 비용을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1호·제12호 및 제20조의6 신설).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 10. (생략)	1. ~ 10. (현행과 같음)
<u><신설></u>	11. “보편적 공급”이란 가스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차별없이 보편적으로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를 공 급하는 것을 말한다.
<u><신설></u>	12. “공익서비스”란 도시가스사업자 가 영리목적의 영업활동과 관계없 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정 책이나 공공목적 등을 위하여 제 공하는 가스공급사업을 말한다.
<u><신설></u>	제20조의6(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① 가스도매사업자의 공익서비스 제공 으로 발생하는 경영 손실, 재정 부담 등의 비용(이하 “공익서비스비용”이 라 한다)은 국가 또는 해당 공익서 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이하 “원인

현행	개정안
	제공사”라 한다)에게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공공부문 및 주택부문에 제공하는 공익서비스로 한정한다. 1.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국가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 요인에 불구하고 도시가스 요금을 유지·감면하거나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을 최소화함으로써 발생하는 가스도매사업자의 경영 손실 2. 수지균형의 확보가 극히 곤란함에도 불구하고 보편적 공급을 계속함으로써 발생하는 가스도매사업자의 경영 손실 3. 원료비 연동제의 유보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의 경영 손실 및 재정 부담 4. 가스도매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의 특수목적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익서비스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기관으로 하여금 공익서비스비용의 산정 및

현행	개정안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익서비스 비용의 부담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가스도매사업자와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정부의 내부지침(「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에 따라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제도를 시행하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목적에 부응하기 위한 다양한 공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지원 현황]

(단위: 가구, 백만원)

구분		장애인	국가유공	독립유공	기초수급	차상위	차상위 확인서발급	다자녀	계
2022	가구수*	433,845	4,011	3,300	805,612	90,092	30,982	247,165	1,615,007
	도매 경감액	41,200	394	307	60,815	4,512	752	6,179	114,159
	소매 경감액	17,641	170	247	26,078	1,934	330	2,645	49,045
	합계	58,841	564	554	86,893	6,446	1,082	8,824	163,204
2023	가구수	442,901	4,359	4,502	924,996	87,837	35,892	250,561	1,751,048
	도매 경감액	129,545	1,297	1,246	270,515	34,756	3,639	20,718	461,716
	소매 경감액	17,754	172	162	27,930	2,023	369	2,775	51,185
	합계	147,299	1,469	1,408	298,445	36,779	4,008	23,493	512,901
2024 (11월 까지)	가구수	420,410	4,115	4,322	968,494	80,019	32,891	234,882	1,745,133
	도매 경감액	102,480	998	1,023	241,054	26,216	2,213	15,986	389,970
	소매 경감액	14,633	143	146	23,314	1,345	312	2,255	42,148
	합계	117,113	1,141	1,169	264,368	27,561	2,525	18,241	432,118

* 경감가구수는 매년말 기준, 경감액은 1~12월 누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현재 취약계층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공익서비스의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비용에 반영하여 차년도 요금에 반영하고 있음¹¹⁾).

그런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서비스를 위해 도시가스요금을 통제하면서도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으므로, 높은 수준의 공익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도시가스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개정안은 가스도매사업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경영 손실, 재정 부담 등의 비용을 국가 또는 해당 공익서비스를 요구한 자가 부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가스도매사업자의 재무상태 개선 및 소비자 가스요금 인상 완화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11)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대한 도시가스요금 경감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86호) 제10조(경감액에 대한 공급비용 처리) 경감액에 대한 공급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가스도매사업자는 이 지침에 의거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도매공급비용 경감금액**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도매요금 공급비용에 반영**한다. 이 경우, 도매요금 공급비용에 반영하는 경감금액은 총괄원가와 별도로 가산하는 금액으로, **도매공급비용 산정 시에는 예상액을 반영하고 예상과 실적의 차이를 차년도에 정산하여 차차기년도 도매공급비용에 가감**한다.
2.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이 지침에 의거 **사회적배려대상자에 대한 소매공급비용 경감금액**을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소매요금 공급비용에 반영**한다.

첫째, 안 제2조제11호는 “보편적 공급”을 가스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차별없이 도시가스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현행법 제19조제3항¹²⁾에서 가스공급신청 가구 수가 일정 수 미만인 경우, 지형적 특수성으로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 지리·환경 등 여건을 감안할 때 가스공급이 부적절한 경우 등에 일반도시가스사업자의 도시가스 공급 의무를 면제하고, 제19조의3¹³⁾에서 이러한 사유로 인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과 상충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와 달리 LPG, 지역난방 등 대체재가 존재하는 도시가스에 대한 보편적 공급의무를 부여할 경우 경

12)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도시가스사업자의 공급 의무)

③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허가받은 공급권역에 있는 가스사용자에게 도시가스의 공급을 거절하거나 공급이 중단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지역으로 가스공급을 신청하는 가구 수가 시·도 고시로 정하는 수 미만인 경우
2. 철도·고속철도, 상·하수도, 하천, 압반 등 지형이 특수하여 가스공급시설 설치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시설의 안전확보가 곤란한 경우
3. 지리, 환경 등 지역여건을 감안할 때 가스공급이 부적절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한 경우
4.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공사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5.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13)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어려운 경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성이 부족한 지역에 대한 공급비용 상승으로 국민 편익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현행법 제19조제3항 공급 의무 예외 조항과 상충된다는 입장임.

또한, “보편적 공급”은 안 제20조의6제2항제2호에서만 사용되므로 정의 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2024년 9월 「도시가스사업법」 개정¹⁴⁾으로 제20조의3에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되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둘째, 안 제20조의6제2항 및 제3항은 공익서비스비용의 범위 및 비용의 산정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20조의6제1항은 공익서비스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여부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동 조항의 실효성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¹⁵⁾.

14) 「도시가스사업법」 [시행 2025. 3. 21.] [법률 제20440호, 2024. 9. 20., 일부개정]

제20조의3(도시가스요금의 경감) ① 가스도매사업자 또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빈곤층 등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가 **보편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가스도매사업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지원이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지원 대상자를 대신하여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 대상자의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지원 대상자의 동의는 지원 대상자의 신청으로 볼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대상자의 범위, 지원의 내용,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15) 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조항은 「철도산업발전기본법」을 참고한 것으로 보이는데, 동법에서는 **원인제공자의 공익서비스비용 부담을 의무화**하고, 원인제공자는 철도운영자와 공익서비

셋째, 안 제2조제12호는 공익서비스의 제공 주체로 가스도매사업자 등을 포함한 “도시가스사업자”¹⁶⁾를 규정하고 있는 반면, 안 제20조의6 제1항은 “가스도매사업자”의 공익서비스비용에 대한 부담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익서비스 제공 주체와 공익서비스 비용 보전 대상을 일치시킬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넷째, 안 제20조의6제1항은 공익서비스비용을 국가 또는 해당 공익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이하 “원인제공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

스비용의 보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있음.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공익서비스비용의 부담) ①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하는 비용(이하 “공익서비스비용”이라 한다)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해당 철도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이하 “원인제공자”라 한다)가 부담하여야 한다.

②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철도운영자가 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국가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철도운임·요금을 감면할 경우 그 감면액
2. 철도운영자가 경영개선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철도이용수요가 적어 수지균형의 확보가 극히 곤란하여 벽지의 노선 또는 역의 철도서비스를 제한 또는 중지하여야 되는 경우로서 공익목적을 위하여 기초적인 철도서비스를 계속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영손실
3. 철도운영자가 국가의 특수목적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제33조(공익서비스 제공에 따른 보상계약의 체결) ①원인제공자는 철도운영자와 공익서비스비용의 보상에 관한 계약(이하 “보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보상계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철도운영자가 제공하는 철도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에 관한 사항
2. 공익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원인제공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보상내용 및 보상방법 등에 관한 사항
3.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의 수정·갱신과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원인제공자와 철도운영자가 필요하다고 합의하는 사항

③원인제공자는 철도운영자와 보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내용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공익서비스비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그 기관으로 하여금 공익서비스비용의 산정 및 평가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⑤보상계약체결에 관하여 원인제공자와 철도운영자의 협이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원인제공자 또는 철도운영자의 신청에 의하여 위원회가 이를 조정할 수 있다.

1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도시가스사업자”란 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은 가스도매사업자,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나프타부생가스·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및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를 말한다.

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원인제공자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다섯째, 안 제20조의6제2항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하는 공익서비스비용의 범위로 4가지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중 제1호(다른 법령에 의하거나 국가정책 또는 공공목적을 위하여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 도시가스 요금의 인상 요인에 불구하고 도시가스 요금을 유지·감면 또는 인상을 최소화함으로써 발생하는 가스도매사업자의 경영 손실)와 제3호(원료비 연동제의 유보에 따른 가스도매사업자의 경영 손실 및 재정 부담)는 그 내용이 유사하므로 이를 통합하거나 차별화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64

※ 참고자료

1. 도시가스요금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 (한국가스공사 천연가스 공급규정 별표 3)

1. 적용대상

- 본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에서 대상으로 하는 원료비 및 물량은 평균요금제용 원료비 및 도입물량으로 한정한다.
- 또한, 본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은 아래 세 가지 항목으로 구분하며, 각 항목별로 적용하는 용도는 아래와 같다.
 - 민수용 : 주택용, 일반용
 - 상업용 : 업무난방용, 냉난방공조용, 산업용, 수송용
 - 도시가스발전용 : 열병합용, 연료전지용, 열전용설비용

2. 원료비의 산정

가. 원료비 단가 산정

- 민수용 원료비의 경우, 원료비 산정기간 중의 일반원료비 정산단가를 가감한 일반원료비 및 스팟 원료비 등의 가중평균단가와 안전관리부담금을 합산한다.
 - 원료비 단가(원/MJ)=(일반원료비 정산단가 가감 후 일반원료비, 스팟원료비, 동해가스 및 LPG의 가중평균단가)÷(1-손실률)+안전관리부담금
 - 원료비 단가는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상업용 및 도시가스발전용 원료비의 경우, “발전용요금(평균요금제)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의 원료비 단가 산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단가에 안전관리부담금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 원료비 단가(원/MJ)=[(천연가스 도입대금+도입부대비)÷총도입열량(MJ)]÷(1-손실률)+안전관리부담금
 - 원료비 단가는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원료비 단가 산정시, 도시가스용 공급에 소요되는 도입금액과 도입물량은 천연가스 수급계획 및 판매실적, 계절별 수요 등 인과관계에 따른 적절한 배부기준에 의하여, 도시가스용으로 배분하여 적용한다. <신설 2021.12.07>

나. 민수용 원료비 구성항목별 산정방법

- 일반원료비
 - 단가산정방식
 - 연중균등 도입(DES 도입조건)을 가정하여 각 도입계약별 가격공식을 바탕으로 연간도입물량비율로 가중 평균하여 산정하되, FOB조건 도입계약의 경우 수송비와 보험료는 각각 예상치를 해당 도입계약 공식에 반영한다.
 - 적용월(n월)의 도입물량은 n-1월 기간 중에 산정한 예상치를 적용한다.

- 일반원료비는 무상가고를 반영하여 산정한다. - 산정시기 : 일반원료비 가격공식은 원료비 손익정산 시 산정하며 연중에 신규 도입 계약 체결 또는 기존계약의 단가산정방식 및 계약물량 변경시 조정한다. • 신규 도입계약 체결 : 최초년도 도입물량은 도입 개시월로부터 12월까지 균등도입을 가정하여 연간 도입물량비율을 산정
○ 스팟원료비단가 : 스팟 도입금액 ÷ 도입물량 - 적용월(n월)의 도입금액과 도입물량은 n-1월 기간 중에 산정한 예상치를 적용한다. ○ 동해가스계약, LPG 원료비 단가 : 적용월(n월) 도입예상물량에 대한 예상금액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 도입부대비 : 일반원료비, 스팟원료비, 동해가스 등의 도입금액과 물량에 따른 관세, 개별소비세, 수입부과금, 화물입항료, 검정료, 부취제 및 기타비용 등 도입부대비는 관련법령 및 계약 등에 의한 지불 예상금액을 적용하여 원료비 단가에 포함한다. ○ 안전관리부담금 : 관련 법령에 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 일반원료비의 정산 - 정산손익의 산정 : 일반원료비(DES 도입기준) 단가와 도입예정물량에 의한 월별 원료비 단가의 차액(DES 도입기준)에 월별 판매예상물량을 곱하여 산정한다. - 적용유가 및 환율 : 전년말 확정된 당해 연도 예산편성기준 - 도입예정물량 : 연간도입일정(ADP)에 의한 월별 도입물량 - 판매예상물량 : 수급계획 물량 - 정산손익의 배부 : 일반원료비 정산손익은 당해 연도 판매예상물량에 균등 배부한다.
다. 상업용 및 도시가스발전용 원료비 구성항목별 산정방법 ○ “발전용요금(평균요금제)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의 원료비 구성항목별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하며, 안전관리부담금은 관련 법령에 정한 금액을 적용한다.
라. 법령의 제·개정 및 계약의 변경시 처리 ○ 법령의 제·개정 및 계약의 변경 등으로 인한 원료비 구성항목 또는 산정방법에 변동이 있을 경우는 변동된 내용을 적용한다.
3. 운영방법
가. 적용범위 ○ 2의 가의 원료비단가(이하 “산정원료비”라 한다.)는 조정월(n월)기준으로 n-1월의 LNG 기준유가(JCC 추정치 등)와 n-2월 6영업일에서 n-1월 5영업일까지 기간의 최고고시 평균매매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나. 기준원료비 설정 ○ 기준원료비란 원료비의 조정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치로서 요금상 원료비에서 미수급(미지급금) 정산단가를 제외한 단가를 말한다.

다. 원료비 조정

- 민수용 산정원료비가 민수용 기준원료비를 $\pm 3\%$ 초과하여 변동된 경우 산정원료비가 새로운 기준원료비가 되며, 요금상 원료비는 기준원료비에 미수금(미지급금) 정산단가를 가감한다. 단, 제세공과금(관세 제외)이 관련법령에 의해 변동한 경우에는 그 변동폭에 관계없이 변동분을 반영하여 기준원료비가 조정되며, 산정원료비가 조정된 기준원료비를 $\pm 3\%$ 초과하여 변동된 경우 산정원료비가 새로운 기준원료비가 된다.
- 단, 상업용 및 도시가스발전용에 대하여는 산정원료비의 $\pm 3\%$ 초과 변동과 관계없이, 산정원료비가 새로운 기준원료비가 된다.

라. 조정주기 및 조정시기

- 민수용 원료비의 조정주기는 2개월(홀수월)로 한다. 단, 제세공과금(관세 제외) 변동은 당월 조정을 원칙으로 하며, 조정시기는 조정월(n월)의 1일로 한다.
- 상업용 및 도시가스발전용 원료비의 조정주기는 매월로 하며, 조정시기는 조정월(n월)의 1일로 한다.

4. 보고 및 통지

- 공사는 요금조정안을 시행일 전월 17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시행일 전월 26일까지 요금조정안에 대한 별도의 의견이 없는 경우에는 자동 조정된 것으로 본다.
- 공사는 조정된 요금표를 시행일 전일까지 시·도지사 및 일반도시가스사업자에게 통지한다.

5. 비상시 연동제 유보

- 공사는 원료비 연동제 시행지침을 운영함에 있어, 일정 사유 발생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연동제를 일시 유보한다는 통보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각 항목별 사유는 아래와 같다.
 - 민수용 원료비의 경우, 국제원유가 또는 환율급등 등으로 LNG가격이 현저하게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어 국민생활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상업용 원료비의 경우, 천연가스 수급문제 발생 또는 국제원유가 또는 환율급등 등으로 LNG가격이 현저하게 상승하거나 상승할 우려가 있어 국민생활안정과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용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도시가스발전용 원료비의 경우, 천연가스 수급문제 등으로 인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사는 연동제 유보로 인해 원료비손실이 발생할 경우 향후 가스가격 안정 시 원료비 손실분을 가격에 반영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6. 원료비 손익정산

가. 정산주기

- 원료비 전년 4/4분기부터 당년 3/4분기까지 1년 단위로 하되, 당년 4/4분기 월결산 금액을 포함한다. 기간 중 발생한 원료비 손익을 차기년도 5월부터 차차기년도 4월까지의 원료비에 가감 적용하고, FOB 수송비정산은 전년 1월~12월까지(말레이시아 등의 경우 회계연도의 차이로 인해 전년4월~당년4월까지) 발생한 FOB 수송비 손익을 차기년도 FOB수송비에 가감 적용한다.

나. 정산대상

- 정산은 도입원료비의 적용시차, JCC의 추정치와 확정치의 차이, FOB 수송비 정산 및 이와 관련된 부대비 변동, 전년도까지의 정산손익 미해소분, 원료비 손익관련 금융비용, 비상시 연동제 유보, 가스기기비용보상 등에 따른 모든 원료비 손익을 대상으로 하며, 공인된 회계법인의 검증을 거쳐 확정한다.

다. 정산단가 산정

- 정산단가는 당해 연도 원료비 손익을 수급계획상 차기년도 5월부터 차차기년도 4월까지의 도시가스용 판매물량으로 나누어 산정하며, 세 가지 항목(민수용, 상업용, 도시가스발전용)으로 각각 원료비 손익 및 판매물량을 구분하여 정산단가를 산정한다.